의 안 번 호

1649

[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] 토보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7. 8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워회 회부일자 : 2020. 7. 8.(수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7. 20.(월)

2. 제안이유

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총괄

○ 취득대상 재산

- 토 지: 33필지 22,820㎡ 3,545,560천원

- 그 외 재산: 해당없음

나. 취득대상 재산현황

○ 취득대상 재산 : 토지

(단위: m², 원)

일련	7	재산의	표시		공시	추정	x () ¬1	취득
번호	소재지	지목	지적	편입면적	가액	금액	소유자	사유
1	약사동83	답	2,393	194	58,500	32,980,000	장보은	
2	약사동84-1	답	2,251	1,509	61,000	256,530,000	신용진	
3	약사동84-3	도	99	85	20,100	5,100,000	신용진	중구
4	약사동86	전	397	382	62,000	53,480,000	한용순	축구장 조성
5	약사동87-1	과	1,695	1,695	63,400	339,000,000	신문교	0
6	약사동87-2	과	3,552	2,632	63,400	526,400,000	한용순	

(단위: m², 원)

		2 .2 .2		1			(11)	
일련	7	재산의 -	표시		공시	추정	소유자	취득
번호	소재지	지목	지적	편입면적	가액	금액	- ,, ,	사유
7	약사동87-3	도	4	4	20,100	240,000	신문교	
8	약사동87-4	도	30	30	20,100	1,800,000	신문교	
9	약사동87-5	도	121	121	20,100	7,260,000	한용순	
10	약사동88	답	1,000	998	62,400	169,660,000	김종남	
11	약사동88-1	답	991	877	62,400	149,090,000	김종남	
12	약사동88-2	답	890	442	61,000	75,140,000	전찬국	
13	약사동88-3	도	10	10	20,100	600,000	김이순 외 1명	
14	약사동88-4	도	19	19	20,100	1,140,000	김이순 외 1명	
15	약사동88-5	도	152	15	20,100	900,000	전찬국	
16	약사동88-6	도	9	9	20,100	540,000	전찬국	중구 축구장
17	약사동89	전	1,035	671	60,800	107,360,000	조선자	조성 조성
18	약사동90	전	119	62	62,000	8,060,000	최우외	
19	약사동91	답	8,038	7,392	68,900	1,330,560,000	손진락 외 3명	
20	약사동91-2	도	179	179	21,400	10,740,000	손진락 외 3명	
21	약사동91-3	도	41	41	21,400	2,460,000	손진락 외 3명	
22	약사동93	답	4,045	393	68,900	78,600,000	박유옥	
23	약사동94	전	485	485	69,900	97,000,000	박해동	
24	약사동94-1	도	90	90	21,100	5,400,000	울년왕의 중구	
25	약사동1079	구	5,164	1,354	_	81,240,000	국토 교통부	
26	약사동7-2	임	19,339	1,342	12,300	80,520,000	신경섭 외 6명	

(단위: m², 원)

일련	;	재산의	표시		공시	크 기 기 All	, A =1	취득
번호	소재지	지목	지적	편입면적	가액	추정금액	소유자	사유
27	약사동18	임	11,253	260	13,300	20,800,000	신건규 외 1명	
28	약사동18-1	도	92	70	4,120	2,100,000	신건규 외 1명	
29	약사동18-2	도	650	44	4,120	1,320,000	신건규 외 1명	중구
30	약사동20-3	임	7,882	317	27,700	28,530,000	송춘실	축구장 조성
31	약사동20-4	임	662	423	65,900	50,760,000	한용순	
32	장현동48-9	도	4,802	14	27,800	420,000	울년광역시 중구	
33	장현동50-1	도	2,704	661	_	19,830,000	국토교 통부	

다. 사업계획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중구의 십리대밭 축구장은 25개의 중구 사회인 축구동호회 클럽과 1,500여명의 동호인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나, 태화강 국 가정원 지정 이후 주차공간 부족으로 십리대밭 축구장을 주차 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축구장 부재로 동호인들의 사기저하와 조속한 축구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- 중구축구장 조성부지는 인근 지역에 야구장, 배드민턴장이 구비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이 조성됨으로 복합적인 체 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.
- 향후 중구축구장 조성으로 축구동호인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여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확보로 중구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 효과 기대

20 (제227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○ 사업기간: 2019 ~ 2022

○ 사업내용: 축구장(기본 2면), 주차장, 샤워실, 화장실 등

○ 소요예산

- 총사업비: 10,000백만원 (시비)

-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 재원	계	2020년도	2021년도	2022년도	사업비 내 역
계	10,000	300	4,500	5,200	
국 비	-	_	_	-	- 보상비: 3,545
시비	10,000	300	4,500	5,200	- 공사비: 6,155
구 비	-	_	_	-	- 용역비: 300

○ 사업규모

- 위 치: 울산 중구 약사동 91번지 일원

- 부지면적: 22,820 m²

- 시설내용: 축구장(기본 2면), 주차장, 샤워실, 화장실 등

○ 기준가격 명세

- 취 득

・ 토지매입비: 3,545백만원

· 공 사 비: 6,155백만원

ㆍ 용역비(설계비 등): 300백만원

○ 계약방법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협의에 의한 매입

4. 근거 법규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9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

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

5. 검토의견

O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후보지 1은 다른 후보지에 비해 접근성이 낮게 나타는데, 축구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접근성 분석데이터를 보면 후보지 1. 2. 3 모두 13개동 중 12개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조사 하였고 병영2동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명이 요구됨.

6. 참고 사항 : 붙임

- 가.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
- 나.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
- 다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

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 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 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목적 및 용도
 - 2. 사업기간
 - 3. 소요예산
 - 4. 사업규모
 - 5. 기준가격 명세
 - 6. 계약방법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
 - 2.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
 - 3.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 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득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·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·처분
 -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
 - 6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 - 7.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· 처분
 - 8. 「지방세법」 제117조에 따른 물납
 - 9.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
 - 10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의 취득·처분
 - 11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
 - 12.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 - 2. 취득 ·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 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 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1 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같은 취득 ·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 -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 쳐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 -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이 조에서 "기준가격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사업비로 한다.

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 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

2. 건물

- 가. 단독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
- 나. 공동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
- 다.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: 「지방 세법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

■ 참고 사항

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 m², 천원)

	구 분			신	ਜੋ		변경			합 계			
			건수	수량 (면적)	급액	건수	수량 (면적)	금액	건수	수량 (면적)	금액		
		토지	33	22,820	3,545,560				33	22,820	3,545,560		
	계	건물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
		토지	33	22,820	3,545,560				33	22,820	3,545,560		
취	1. 매입	건물	-										
		기타	-										
	2. 교환	토지											
득	으로	건물		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		
	0 -2]1-]	토지											
	3. 기타 취득	건물											
	717	기타											
	계	토지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
		토지											
	4. 매각	건물											
_,		기타											
처		토지											
	5. 양여	건물											
분		기타											
	6. 교환	토지											
	으로	건물											
	처분	기타											
	7. 기타	토지											
	7. 기다 처분	건물											
	八七	기타											

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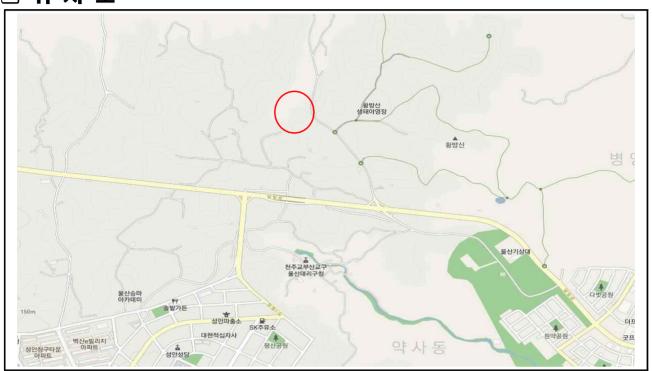
◎ 토지

(단위: m², 천원)

				- 3					
일련	- 12		산의	표시		기준가격	취득(예상)	21 - 21 - 4	ㅂ]
번호	구분	소재지	지목	지적	취득 면적	(공시지가)	시 기	취득사유	고
1	매입	약사동 83	답	2,393	194	58,5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	매입	약사동 84-1	답	2,251	1,509	61,0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3	매입	약사동 84-3	도	99	85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4	매입	약사동 86	전	397	382	62,0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5	매입	약사동 87-1	과	1,695	1,695	63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6	매입	약사동 87-2	과	3,552	2,632	63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7	매입	약사동 87-3	도	4	4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8	매입	약사동 87-4	도	30	30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9	매입	약사동 87-5	도	121	121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0	매입	약사동 88	답	1,000	998	62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1	매입	약사동 88-1	답	991	877	62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2	매입	약사동 88-2	답	890	442	61,0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3	매입	약사동 88-3	도	10	10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4	매입	약사동 88-4	도	19	19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5	매입	약사동 88-5	도	152	15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6	매입	약사동 88-6	도	9	9	20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7	매입	약사동 89	전	1,035	671	60,8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8	매입	약사동 90	전	119	62	62,0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19	매입	약사동 91	답	8,038	7,392	68,9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0	매입	약사동 91-2	도	179	179	21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1	매입	약사동 91-3	도	41	41	21,4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2	매입	약사동 93	답	4,045	393	68,9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3	매입	약사동 94	전	485	485	69,9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4	매입	약사동 94-1	도	90	90	21,1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5	매입	약사동 1079	구	5,164	1,354	_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6	매입	약사동 7-2	임	19,339	1,342	12,3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7	매입	약사동 18	임	11,253	260	13,3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8	매입	약사동 18-1	도	92	70	4,12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29	매입	약사동 18-2	도	650	44	4,12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30	매입	약사동 20-3	임	7,882	317	27,7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31	매입	약사동 20-4	임	662	423	65,9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32	매입	장현동48-9	도	4,802	14	27,800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33	매입	장현동 50-1	도	2,704	661		2021.5.~12.	축구장 조성	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그 위 치 도



□ 현 장 사 진

